

발기인 총 회의 사 록

2019년 5월 30일 시간은 오전 9 시 00 분 주식회사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 수	1명	이의 인수주식총수	600,000 주
출석발기인수	1명	이의 인수주식수	600,000 주

발기인 대표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철수는 발기인 전원이 상
법 363조의 소정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법
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
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
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별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하고 그 여부를 물은 즉, 전원일치
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주금납입의 건

의장은 발기인대표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주금의 납입장소
를 농협은행 여의도문화지점으로 하여, 각 발기인들이 2019년 5월 30일까지 인수
주식에 대한 주금 전부를 납입하도록 정하고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가결하다.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임키
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 내 이 사 박 영 희(750103-2XXXX)

기타비상무이사 김 연 희(801218-2XXXX)

기타비상무이사 정 현 섭(801106-1XXXX)

위 피선거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감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감사 진 형 준(730405-1XXXX)

위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5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소정 사항을 발기인 아닌 이사와 감사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다. 잠시 후 발기인이 아닌 이사및 감사는 별지 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6호 의안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설치장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를 말한바 전원일치로써 다음과 같이 본점 설치장소를 결정하다.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3층(여의도동,농협재단빌딩)

의장은 이상으로써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시간은 오전 9 시 30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다.

2019년 5월 30일

주식회사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겸 발기인대표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철수

